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8. 2. 4. 운영위원회

1. 審 杳 經 過

가. 발의일자 : 2008년 1월 25일

나. 발 의 자 : 고기판 의원 외 7인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1월 25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34회(임시회) 제1차 위원회(2008년 2월 1일) 상정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고 기 판 의원)

가. 제정이유

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에서 소지역사회 및 의회발전과 구정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, 의회에서 주관 및 후원하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저극 유도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표창은 표창장, 상장, 감사장으로 한다.(안 제3조)
- 표창권자는 의회 의장으로 한다.(안 제4조)
- 표창을 행할 때 상금 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.(안 제8조)
- 표창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구청장, 의회사무국장, 및 관내기관·단체장이 추천한다. (안 제9조)
-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.(안 제10조)

-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, 위원회의 위원장 은 부의장으로,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 다.(안 제12조)
-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.(안 제13조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(專門委員 김 병 욱)

-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고 기관 내부에서 효력을 갖고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규정으로 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지방의회 표창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의한 내용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면읍·면·동 이상의 행정·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·예술·체육행사·각급 학교의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가능함.
- 다만, 부상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표창, 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창의적인 노력으로 의회 발전에 기여한 주민 등을 표창함으로써 구민화합과 열린 의정활동을 구현하고 의회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審査結課: 原案可決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안

의 안 번 호 121

발의연월일: 2008. 1. 25.

발 의 자: 고기판의원 외 7 명

1. 제정이유

○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에서 평소 지역사회 및 의회발전과 구정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, 의회에서 주관 및 후원하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표창은 표창장, 상장, 감사장으로 한다.(조례안 제3조)
- 나. 표창권자는 의회 의장으로 한다.(조례안 제4조)
- 다. 표창을 행할 때 상금 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.(조례안 제8조)
- 라. 표창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구청장, 의회 사무국장 및 관내 기관· 단체장이 추천한다. (조례안 제9조)
- 마.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.(조례안 제10조)
- 바.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,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,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.(조례안 제12조)
- 사.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.(조례안 제13조)

3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: 2008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

나. 입법예고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함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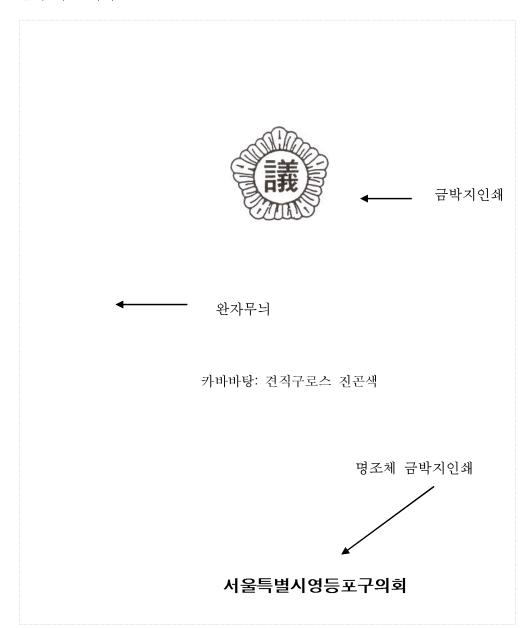
- 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표창대상) 표창은 영등포구 지역사회의 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, 기관, 단체, 공무원과 각종 행사에서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.
- **제3조(표창의 종류)**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, 상장, 감사장으로 한다. 단. 이에 해당하는 패로써 수여할 수 있다.
- 제4조(표창권자)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의회 의장으로 한다.
- **제5조(표창장 수여대상)**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 하다.
 - 1.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있거나,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
 - 2. 각종 선행과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
 - 3.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효행, 선행 등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한 모범학생
- 4.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
- 제6조(상장 수여대상)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.
- 1. 체육대회, 경연 대회,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

- 2. 의회에서 주관 및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
- **제7조(감사장 수여대상)**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 한다.
 - 1.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
 - 2.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
 - 3. 구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
- **제8조(표창의 방법 및 부상)** ①표창장, 상장, 감사장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의 서식에 의한다.
 - ②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.
- 제9조(표창대상자의 추천) ①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또는 구청장, 의회 사무국장 및 기관·단체장이 추천한다.
 - ②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표창대상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**제10조(표창의 시기)**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.
- 제11조(공적심사)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. 다만, 위원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- 제12조(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.
 - ②제1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,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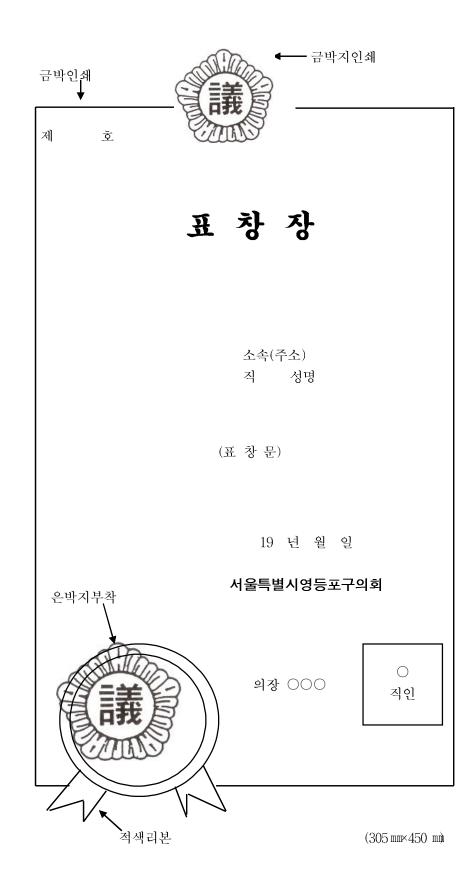
-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다.
-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**제13조(이중 표창의 금지)**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.
- 제14조(표창자 명부 및 통보) 표창은 반드시 별지 제7호 서식의 표창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고 의회 사무국에서 관리하며 소속기관, 직장 및 단체에 통보한다.
- 제15조(시행세칙) 이 조례에 관한 것 이외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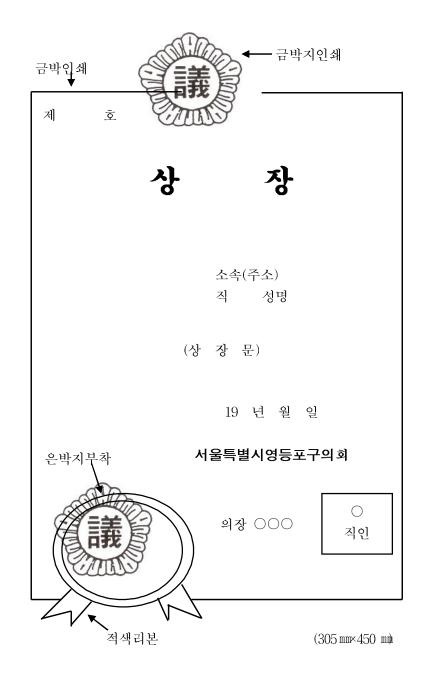
<별지 제2호서식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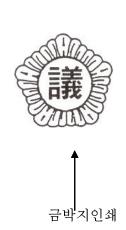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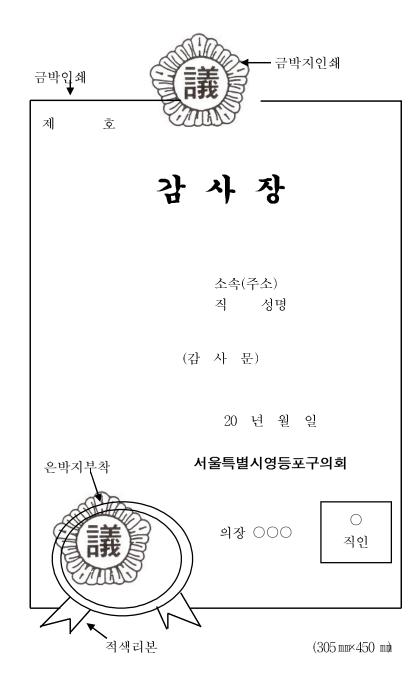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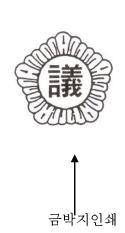
<별지 제3호서식>





<별지 제4호서식>





<u>공 적 조 서</u>

성	명	(한자)							
주민등록번호		군번(군인의경위							
주	소								
소	속			직		위			
직	급			근	무 기	간		년	월
공적요 <i>?</i>	이(50자 내	(외)							
호	격			순		위			
			조	사		자			
소	속			직		위			
직	급			성		명			(1)
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									
			년	월		일			
	추	·천관	직위	성명			(직인)		

주요학력 및 경력								
연 월 일	학 력	연 월 일	학 력					
과거포상기록(훈장, 포장, 표창별로 기록)								
연 월 일	내 용	연 월 일	내 용					
	공 적	사 항						

[※]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.

<별지 제6서식>

<u>공적심사 의결서</u>

	소속	직위	성명	성별	연령	비고		
공적심사								
요구자								
인적사항								
의결주문								
이 유								
년 월 일								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								
위원장 ①								
위 원 ①								
위 원								
			원	1				
			원 o)	(1) (1)				
		위 ·	원		Ū∕			

[※] 공적심사 대상이 많을 경우 그 명부를 별첨할 수 있음.

<u> 표창수상자 명부</u>

	<u>=0,0,0,1</u>							
표창 구분	발급번호	표창일자	소속(직위)	직위	성명	비고		